발 간 등 록 번 호
54-3550000-000020-10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http://www.gyeyang.go.kr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이 병 학 (인)

검 사 위 원 박 종 렬 (인)

검 사 위 원 이 은 선 (인)

검 사 위 원 강 성 은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차 례

Ⅰ. 검사개요 ····· 2

Ⅱ. 총 평 ····· 3

Ⅲ.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 4

1. 일반회계 ····· 4

2. 특별회계 ····· 27

Ⅳ. 기 금 ····· 35

Ⅴ. 채 권(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45

Ⅵ. 채 무 ····· 47

Ⅶ. 공유재산 ····· 49

Ⅷ. 물 품 ····· 50

Ⅸ. 성인지결산 ····· 51

Ⅹ. 계약결산 ····· 5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Ⅰ. 검사개요

1. 검사기간 : 2018. 4. 11 ∽ 4. 30 (20일간)
2. 검사장소 : 계양구청 결산검사장
3.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이병학, 위원 박종렬, 위원 이은선, 위원 강성은
4. 주요 검사내용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 ○ 채권·채무 결산
   - ○ 기금운영 및 금고의 결산
   - ○ 공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결산
   - ○ 성인지 및 재무제표 결산

Ⅱ. 총　　평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 취지는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서 엄격하고 세밀하게 검사함으로써 결산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일부 계산상의 오류 및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 모두는 본 결산검사가 행정수행사항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당한 재무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Ⅲ.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일반회계

1) 세입

○ 세입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소 계	결손처분액	이 월 액
2013년	308,085,634,202	340,128,182,541	317,732,095,992	22,396,086,549	834,290,440	21,561,796,109
2014년	350,777,515,660	378,674,436,292	354,629,313,010	24,045,123,282	997,675,832	23,047,447,450
2015년	377,687,163,275	418,576,097,104	393,645,943,995	24,930,153,109	2,080,167,108	22,849,986,001
2016년	413,546,511,822	478,835,703,899	453,601,222,075	25,234,481,824	2,013,509,728	23,220,972,096
2017년	478,270,422,881	520,418,988,088	496,484,542,126	23,934,445,962	2,313,929,640	21,620,516,322

2017년 회계연도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214,119,245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64,723,911,059원, 수납액은 42,883,320,051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15.65%, 수납액은 9.45%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재원(실제수납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율 (%)
총 계	317,732,095,992	354,629,313,010	393,645,943,995	453,601,222,075	496,484,542,126	100
지방세수입	40,740,975,490	41,736,474,250	46,659,522,931	48,321,438,370	49,343,840,810	9.94
세외수입	54,595,784,622	23,467,792,721	27,993,293,477	34,308,483,219	33,175,559,592	6.68
지방교부세	7,457,556,000	7,633,085,000	9,084,968,000	8,984,155,000	11,641,342,310	2.34
조정교부금	56,717,386,000	72,838,000,000	69,237,134,000	101,375,658,000	97,753,598,000	19.69
보조금	151,467,393,880	176,025,905,397	188,815,482,660	191,261,507,160	204,642,637,080	41.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6,753,000,000	32,928,055,642	51,855,542,927	69,349,980,326	99,927,564,334	20.13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전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며, 전체 세입액의 63.25%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을 보면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2.12%증가, 세외수입이 3.30%감소, 지방세교부금이 29.58%증가, 조정교부금이 3.57% 감소, 보조금이 7.00%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4.09%가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세수입 징수율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징수액			징수율
				계	결손처분액	이월액	
2013년	39,829,000,000	44,449,061,807	40,740,975,490	3,708,086,317	242,648,840	3,465,437,477	91.66%
2014년	39,716,000,000	46,178,997,987	41,736,474,250	4,442,523,737	25,300,810	4,417,222,927	90.38%
2015년	43,431,000,000	52,144,798,757	46,659,522,931	5,485,275,826	84,542,690	5,400,733,136	89.48%
2016년	44,496,000,000	53,669,834,466	48,321,438,370	5,348,396,096	431,503,600	4,916,892,496	90.03%
2017년	46,483,380,000	53,877,430,516	49,343,840,810	4,533,589,706	542,967,210	3,990,622,496	91.56%

2017년도의 수납비율은 2016년도에 비해 1.53%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11,463,61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26,270,000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징수율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징수액			징수율
				계	결손처분액	이월액	
2013년	22,116,117,000	43,522,258,641	24,834,258,409	18,688,000,232	591,641,600	18,096,358,632	57.06%
2014년	20,663,690,000	43,070,392,266	23,467,792,721	19,602,599,545	972,375,022	18,630,224,523	54.49%
2015년	23,201,923,000	47,438,170,760	27,993,293,477	19,444,877,283	1,995,624,418	17,449,252,865	59.01%
2016년	27,134,296,000	54,194,568,947	34,308,483,219	19,886,085,728	1,582,006,128	18,304,079,600	63.31%
2017년	30,125,775,000	52,576,415,848	33,175,559,592	19,400,856,256	1,770,962,430	17,629,893,826	63.10%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21%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91.5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 지방교부세 추이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비율	징수결정액	증감액 증감비율	실제수납액	증감액 증감비율
2013년	7,647,879,000	2,304,072,000 43.12%	7,457,556,000	−232,823,000 −3.02%	7,457,556,000	−232,823,000 −3.02%
2014년	9,758,728,000	2,110,849,000 27.60%	7,633,085,000	175,529,000 2.35%	7,633,085,000	175,529,000 2.35%
2015년	7,516,913,000	−2,241,815,000 −22.97%	9,084,968,000	1,451,883,000 19.02%	9,084,968,000	1,451,883,000 19.02%
2016년	9,504,968,000	1,988,055,000 26.45%	8,984,155,000	100,813,000 1.11%	8,984,155,000	100,813,000 1.11%
2017	10,756,155,000	1,251,187,000 12.16%	11,641,342,310	2,657,187,310 29.58%	11,641,342,310	2,657,187,310 29.58%

○ 조정교부금 추이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비율	징수결정액	증감액 증감비율	실제수납액	증감액 증감비율
2013년	55,404,397,000	10,776,132,000 24.15%	56,717,386,000	12,399,265,000 27.98%	56,717,386,000	12,399,265,000 27.98%
2014년	73,833,585,000	18,429,188,000 33.26%	72,838,000,000	16,120,614,000 28.42%	72,838,000,000	16,120,614,000 28.42%
2015년	66,409,811,000	−7,423,774,000 −10.05%	69,237,134,000	−3,600,866,000 −4.94%	69,237,134,000	−3,600,866,000 −4.94%
2016년	86,634,896,000	20,225,085,000 30.45%	101,375,658,000	32,138,524,000 46.42%	101,375,658,000	32,138,524,000 46.42%
2017년	107,797,421,000	21,162,525,000 24.43%	97,753,598,000	−3,622,060,000 −3.57%	97,753,598,000	−3,622,060,000 −3.57%

○ 보조금 추이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비율	징수결정액	증감액 증감비율	실제수납액	증감액 증감비율
2013년	152,410,975,000	26,546,962,000 21.09%	151,467,393,880	26,129,920,920 20.85%	151,467,393,880	26,129,920,920 20.85%
2014년	179,926,512,000	27,515,537,000 18.05%	176,025,905,397	24,558,511,517 16.21%	176,025,905,397	24,558,511,517 16.21%
2015년	188,618,931,000	8,692,419,000 4.83%	188,815,482,660	12,789,577,263 7.27%	188,815,482,660	12,789,577,263 7.27%
2016년	190,302,778,000	1,683,847,000 0.89%	191,261,507,160	2,446,024,500 1.30%	191,261,507,160	2,446,024,500 1.30%
2017년	204,766,784,000	14,464,006,000 7.60%	204,642,637,080	13,381,129,920 7.00%	204,642,637,080	13,381,129,920 7.0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추이 분석

구 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비율	징수결정액	증감액 증감비율	실제수납액	증감액 증감비율
2013년						
2014년	26,879,000,660		32,928,055,642		32,928,055,642	
2015년	48,508,585,275	21,629,584,615 80.47%	51,855,542,927	18,927,487,285 57.48%	51,855,542,927	18,927,487,285 57.48%
2016년	55,473,573,822	6,964,988,547 14.36%	69,349,980,326	17,494,437,399 33.74%	69,349,980,326	17,494,437,399 33.74%
2017년	78,340,907,881	22,867,334,059 41.22%	99,927,564,334	30,577,584,008 44.09%	99,927,564,334	30,577,584,008 44.09%

○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구 분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3년	834,290,440	48,224,415	29,585,540	529,772,090	31,365,550	195,342,845
2014년	997,675,832	122,464,070	6,283,000	612,152,581	14,437,320	242,338,861
2015년	2,080,167,108	1,616,183,943	1,218,000	334,802,830	127,962,335	0
2016년	2,013,509,728	1,472,943,648	39,942,290	172,419,360	323,708,100	4,496,330
2017년	2,313,929,640	1,362,498,860	8,221,980	498,166,270	134,548,850	310,493,680

2015년, 2016년, 2017년의 결손금 처분액이 연도별로 20억이 넘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해당 부서별로 적절한 징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납 건에 대한 압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과 더불어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세입금 결손처분 수입별 현황

구 분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액 비율	비 고
지방세수입	2013년	44,449,061,807	242,648,840	0.55%	
	2014년	46,178,997,987	25,300,810	0.05%	
	2015년	52,144,798,757	84,542,690	0.16%	
	2016년	53,669,834,466	431,503,600	0.80%	
	2017년	53,877,430,516	542,967,210	1.01%	
세외수입	2013년	73,283,784,854	591,641,600	0.81%	
	2014년	43,070,392,266	972,375,022	2.26%	
	2015년	47,438,170,760	1,995,624,418	4.21%	
	2016년	54,194,568,947	1,582,006,128	2.92%	
	2017년	52,576,415,848	1,770,962,430	3.37%	
총계	2013년	117,732,846,661	834,290,440	0.71%	
	2014년	89,249,390,253	997,675,832	1.12%	
	2015년	99,582,969,517	2,080,167,108	2.09%	
	2016년	107,864,403,413	2,013,509,728	1.87%	
	2017년	106,453,846,364	2,313,929,640	2.17%	

전체 결손처분액 중 지방세수입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이 2016년에는 431,503,600원이고, 2017년에는 542,967,210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이 2016년에는 1,582,006,128원이고, 2017년에는 1,770,962,43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의 결손금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많겠으나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징수 과태료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징수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무재산/폐업등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및 재산압류	기타
2013년	21,561,796,109	693,974,934	378,500,540	18,370,852,885	600,000	2,307,030	2,116,694,720
2014년	23,047,447,450	821,518,990	514,842,320	20,559,270,686	5,300,000	942,017,230	201,204,774
2015년	22,849,986,001	972,357,177	686,079,410	20,497,143,812	194,264,170	409,884,420	90,257,012
2016년	23,220,972,096	1,355,994,748	574,372,624	18,722,031,654	262,073,650	2,142,319,767	164,179,53
2017년	21,620,516,322	2,327,977,552	243,258,164	13,910,298,552	0	106,377,827	5,032,604,227

2017년 세입금 이월액은 작년대비 1,600,455,774원 감소하였습니다.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입금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64.34%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재정을 위해서 납세를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사유별 분류가 달라짐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분류한 부분을 기타에 포함 시켰음을 밝힙니다.

2) 세출결산

○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대비	지출액	예산대비	이월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예산대비
2013	308,085,634,202	15.90%	285,259,800,700	92.59%	11,560,106,660	3.75%	11,265,726,842	3.66%
2014	350,777,515,660	13.80%	303,253,389,463	86.45%	31,264,991,275	8.91%	16,259,134,922	4.64%
2015	377,687,163,275	7.60%	324,796,638,369	86.00%	30,973,194,822	8.20%	21,917,330,084	5.80%
2016	413,546,511,822	8.67%	353,678,015,291	85.52%	38,755,418,881	9.37%	23,328,551,019	5.64%
2017	478,270,422,881	13.53%	394,215,007,725	82.43%	45,912,789,561	9.60%	38,142,625,595	7.98%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현액은 64,723,911,059원 증가, 지출액은 40,536,992,434원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7,157,370,68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3.53%, 지출액은 10.28%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5.58%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8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비율은 2013년에는 3.6%, 2014년에는 4.6%, 2015년에는 5.8%, 2016년 5.6%, 2017년에는 7.9%로 직전연도 대비 2.3%높아졌으며, 직전 4년 평균치보다 3%정도 높은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출현황 (부문별 분석)

(단위 : 원)

지출액	2015	2016	전년대비(%)	2017	전년대비(%)
합　　계	324,796,638,369	353,678,015,291	108.89	394,215,007,725	111.46
일반공공행정	19,754,443,971	27,009,136,113	136.72	26,150,205,586	96.82
공공질서및안전	1,112,820,988	3,310,564,990	297.49	6,522,550,156	197.02
교육	5,587,809,660	5,758,689,290	103.06	7,956,257,760	138.16
문화및관광	8,009,484,054	10,093,940,670	126.02	9,135,925,143	90.51
환경보호	14,168,808,993	14,653,734,149	103.42	15,159,824,023	103.45
사회복지	189,419,686,484	195,964,540,922	103.46	207,987,173,872	106.14
보건	10,222,661,701	10,927,176,946	106.89	17,617,677,846	161.23
농림해양수산	3,670,758,197	6,316,151,380	172.07	6,323,747,930	100.12
산업・중소기업	713,435,669	390,457,270	54.73	1,698,145,316	434.91
수송및교통	1,102,706,230	8,946,601,140	811.33	14,340,239,530	160.29
국토및지역개발	16,375,916,492	9,047,741,933	55.25	18,241,464,870	201.61
예비비	0	0	0.00	0	0.00
기타	54,658,105,930	61,259,280,488	112.08	63,081,795,693	102.98

전체 지출액 중에서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07,987,173,872원(52.76%), 기타 63,081,795,693원(16%), 일반공공행정 26,150,205,586원(6.63%)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뽑을 수 있으며, 그 수치는 산업 중소기업에서 434.91%,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01.91%,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97.02%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이 2016년 대비 64,723,911,059원 증가하고 지출액이 12,022,632,95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초 생활보장부문에서 약 41억원, 노인 청소년 분야에서 약 65억원 증가 하였고, 반면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는 약 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의 지출은 일반회계 세출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각 부문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이 2016년 대비 2,177,310,000원 증가하고 지출액이 1,307,688,046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지출액이 434.91% 증가한 분야입니다. 이는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병방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한 예산이 36억원 가량 전기에서 이월되어 이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 세출현황 (실과별 분석)

(단위 : 원)

회 계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85,259,800,700	303,253,389,463	324,796,638,369	353,678,015,291	394,215,007,725
의회사무국	771,938,686	730,405,710	895,968,438	741,697,315	752,175,960
기획예산실	11,396,808,546	5,752,555,542	3,302,947,885	6,475,271,732	7,191,740,391
홍보미디어실	-	-	-	1,602,211,533	2,121,430,489
감사실	60,636,150	98,179,700	82,851,740	47,244,350	49,213,350
자치행정과	45,416,655,285	50,422,957,149	53,481,800,778	57,746,432,596	60,650,534,451
인재양성과	11,784,037,890	16,543,305,525	13,704,975,701	6,623,957,739	13,091,633,910
문화체육관광과	-	-	-	13,506,690,040	9,242,040,986
민원여권과	406,755,596	1,103,369,340	349,551,150	378,396,268	588,776,836
재무경영과	1,965,408,563	1,907,072,326	2,833,989,400	2,002,799,669	1,863,406,588
세무1과	472,602,697	293,445,110	330,974,690	377,847,330	419,767,810
세무2과	248,672,580	345,260,330	330,829,600	330,364,770	257,897,341
토지정보과	1,690,905,634	2,492,411,281	2,784,488,201	348,098,240	1,037,301,930
주민복지과	26,275,277,451	27,727,270,860	26,042,750,009	29,884,255,525	34,438,147,542
노인장애인복지과	48,830,184,738	60,432,971,598	75,491,549,763	80,073,405,169	87,739,715,537
여성보육과	77,268,162,754	82,843,114,145	82,956,633,136	78,657,597,493	72,637,483,210
환경과	721,710,570	448,690,032	481,149,267	1,129,067,930	778,870,760
위생과	147,107,920	364,273,846	488,319,900	538,847,385	581,081,820
청소행정과	17,302,180,953	18,029,430,147	19,020,815,536	20,294,166,228	21,533,347,543
지역경제과	7,118,250,299	4,309,538,237	4,858,199,839	6,957,047,270	8,790,217,046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설과	8,183,165,225	7,460,959,005	12,140,639,539	10,388,470,770	15,556,318,985
건축과	1,157,400,740	205,093,000	4,550,620,286	6,734,975,041	7,420,592,630
도시정비과	5,673,289,146	1,806,350,551	676,527,810	587,576,460	621,732,640
공원녹지과	6,223,205,251	6,242,220,534	5,352,089,051	9,982,515,277	15,001,004,482
교통행정과	216,374,512	672,055,420	702,773,970	292,968,840	3,456,218,450
교통민원과	373,451,800	690,321,340	426,762,240	452,907,130	640,269,410
안전총괄실	222,239,840	253,090,190	265,479,610	3,265,456,850	4,477,838,506
보건행정과	2,069,979,680	1,120,416,950	1,106,376,650	1,250,522,360	7,013,383,473
건강증진과	6,455,692,473	8,122,624,850	8,938,407,544	9,657,367,640	7,306,409,540
지역보건과	-	-	-	-	5,634,458,545
장기보건지소	101,207,590	103,023,352	95,553,192	183,575,971	202,057,799
효성1동	280,133,720	274,260,800	351,800,677	378,928,450	266,227,780
효성2동	263,194,423	274,067,409	269,246,320	267,678,330	280,734,381
계산1동	236,829,491	226,993,550	233,223,930	234,315,870	250,618,055
계산2동	200,212,340	199,334,120	216,927,610	213,089,876	216,096,114
계산3동	192,267,190	190,894,020	229,716,820	201,396,870	205,713,260
계산4동	192,964,466	200,150,120	209,600,240	215,407,970	216,395,010
작전1동	271,589,350	274,076,830	284,430,921	282,386,656	284,037,934
작전2동	235,068,640	224,804,300	292,476,269	375,501,008	255,669,930
작전서운동	251,390,158	260,030,850	296,494,067	263,711,376	277,714,148
계양1동	287,325,333	312,337,028	246,851,460	211,319,114	217,429,920
계양2동	295,523,020	296,034,366	307,453,470	302,568,530	312,276,170

2017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복지서비스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여성아동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과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3과로 분과하여 부서신설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 보건행정과의 지출액은 7,013,383,473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계양구 보건소 신축 사업에서 토지구입비 등으로 5,945,646,190원이 지출된 사유 때문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는 큰 단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재양성과】

2017년 인재양성과의 지출액은 13,091,633,910원으로 작년대비 19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37억원 가량은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이 인재양성과 아동팀으로 팀 이관됨에 따른 증가액이며, 9.8억원 가량은 2017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된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2018년 3월부터 무상급식의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도 지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없음
- 예산 전용 : 36,671,000원(13건)
- 예산 이체 : 9,630,305,000원(67건)

65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의한 이체이며, 2건은 사업변경의 사유로 이체 되었습니다.

○ 예비비지출

2017년 예비비 예산액은 27,519,396,000원이며, 이중 86,028,730원(5건)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없이 31,67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설립에 따른 지출(8,595,400원) 및 지역경제과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지출(77,433,330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 계속비 집행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7건 22,789,671,720원이며, 이중 15건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으며, 2건의 사업은 2017년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계양 산성박물관 건립)

  2017년 사업시행 5차 연도로서 예산현액 7,983,276,660원 중 당해연도 계속비 지출액은 2,022,244,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1,031,960원입니다.

- 장기동 실내 체육시설 건립

  2017년 사업시행 4차 연도로서 예산현액 1,432,728,360원 중 당해연도 계속비 지출액은 1,396,562,860원이며, 집행잔액 36,165,500원을 남기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17년 사업시행 1차 연도로서 예산현액 812,000,000원 중 당해연도 계속비 지출액은 51,907,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0,092,100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외 98건이며, 금액은 45,912,789,561원입니다.

- 명시이월 : 16,724,841,050원(46건)
- 사고이월 : 3,191,100,700원(25건)
- 계속비이월 : 25,996,847,811원(27건)

이월사업비 내역과 각 실과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일치합니다.

2.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수납비율(B/A)
2013년	377,409,000	643,866,194	398,387,396	245,478,798	0	61.08%
2014년	317,038,000	627,393,462	353,444,834	273,948,628	110,979,840	56.34%
2015년	369,621,000	1,491,850,860	443,947,692	1,047,903,168	40,251,810	29.76%
2016년	595,554,000	1,665,363,193	623,617,655	1,041,745,538	1,328,260	37.45%
2017년	553,903,000	1,636,660,789	665,825,517	970,835,272	1,724,930	40.68%

의료급여기금의 수납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가 40.68%로 2016년도에 37.45%에 비해 수납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납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감 (△)액					
2013년	377,409,000	0	0	0	0	377,409,000	370,201,146	0	7,207,854
2014년	317,038,000	0	0	0	0	317,038,000	312,495,000	0	4,543,000
2015년	369,621,000	0	0	0	0	369,621,000	332,408,140	0	37,212,860
2016년	595,554,000	0	0	0	0	595,554,000	567,452,668	0	28,101,332
2017년	533,903,000	0	0	0	0	533,903,000	523,402,552	0	10,500,448

세출예산액은 533,90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23,402,552원으로 세출예산의 98.03%에 해당하며 집행잔액은 1.97%로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2.73% 감소하였습니다. 본예산과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 집니다.

2)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수납비율(B/A)
2013년	9,115,301,490	16,036,435,784	9,777,443,024	6,258,992,760	172,667,390	60.97%
2014년	9,582,907,990	15,492,993,912	8,486,814,332	7,006,179,580	283,817,630	54.78%
2015년	9,449,473,700	16,656,515,858	9,364,768,128	7,291,747,730	1,499,745,790	56.22%
2016년	9,922,974,020	15,955,667,173	10,125,368,823	5,830,298,350	478,955,060	63.46%
2017년	15,721,332,760	20,849,141,647	15,656,724,145	5,192,417,502	607,530,700	74.74%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5,798,358,740원이 증가하여 약 58.43%의 큰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납비율도 전년대비 11.28%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감(△)액					
2013년	7,698,186,000	1,417,115,490	0	0	0	9,115,301,490	4,633,180,692	3,597,713,990	884,406,808
2014년	5,985,194,000	3,597,713,990	0	0	0	9,582,907,990	3,618,910,720	3,317,725,700	2,646,271,570
2015년	6,131,748,000	3,317,725,700	0	0	0	9,449,473,700	5,499,356,579	2,697,713,020	1,252,404,101
2016년	7,225,261,000	2,697,713,020	0	0	0	9,922,974,020	6,777,644,490	1,170,541,780	1,974,787,750
2017년	14,550,791,000	1,170,541,780	0	0	0	15,721,332,780	5,904,862,286	8,810,026,370	1,006,444,124

예산현액은 15,721,332,780원이며 예산현액의 37.56%인 5,904,862,286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8,810,026,37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특징상 기중에 결정되는 국, 시 보조금으로 인해 추가 경정예산을 거쳐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병방동 8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효성동 33-15번지공영주차장 조성>등 사업이 추가로 지원 확정되어 전년대비 200%가량 세출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조

성>사업은 예산현액 2,577,800,000원 중 47,717,300원이 지출되고, 2,530,082,7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계산동 959-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212,000,000원 중 837,813,190원이 지출되고, 374,186,8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 서운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 세입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수납비율(B/A)
2016년	14,627,789,000	14,627,789,720	14,627,789,720	0	0	100%
2017년	16,575,361,000	16,575,360,740	16,575,360,740	0	0	100%

○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2016년	14,627,789,000	0	0	0	0	14,627,789,000	500,000,000	14,125,650,000	2,139,000
2017년	2,449,711,000	14,125,650,000	0	0	0	16,575,361,000	6,432,876,560	9,972,773,440	169,711,000

2016년 신설된 특별회계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16,575,361,000원 중 6,432,876,560원을 지출하고, 9,972,773,4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반환으로 지출된 금액은 2,260,000,000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6,432,876,560원입니다.

4) 지하수특별회계

○ 세입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수납비율(B/A)
2013년	219,360,000	258,341,797	228,805,637	29,536,160	0	88.56%
2014년	220,576,000	244,432,693	204,865,803	39,566,890	0	83.81%
2015년	226,848,000	270,833,110	197,632,610	73,200,500	0	72.97%
2016년	232,607,000	289,872,752	223,669,108	66,203,644	0	77.16%
2017년	267,844,000	327,560,235	237,584,491	89,975,744	0	72.53%

지하수 특별회계는 2008년에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납비율이 2013년 88.6%, 2014년 83.81%, 2015년도는 72.97%, 2016년도는 77.16%이고, 당해연도인 2017년에는 72.53%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 및 수납관리가 요구됩니다.

○ 세출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2013년	219,360,000	0	0	0	0	219,360,000	68,229,870	0	151,130,130
2014년	220,576,000	0	0	0	0	220,576,000	38,016,880	0	182,559,120
2015년	226,848,000	0	0	0	0	226,848,000	25,025,170	0	201,822,830
2016년	232,607,000	0	0	0	0	232,607,000	22,162,470	0	210,444,530
2017년	267,844,000	0	0	0	0	267,844,000	46,991,700	0	220,852,300

지출액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및 보조지하수 관측망 사업에 46,991,7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220,85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Ⅳ.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해당 연도 증감액			해당연도 말 현재액
			계(A-B)	조성액(A)	사용액(B)	
총 계(2017년)		9,768,264,340	2,624,642,733	2,997,628,448	372,985,715	12,392,907,073
사회 복지 기금	2013년	2,571,877,904	59,457,028	147,207,028	87,750,000	2,631,334,932
	2014년	2,631,334,932	142,802,260	355,917,260	213,115,000	2,774,137,192
	2015년	2,774,137,193	25,349,547	117,620,267	92,252,720	2,799,486,739
	2016년	2,799,486,739	86,134,106	225,165,586	139,031,480	2,885,620,845
	2017년	2,885,620,845	163,090,098	198,425,568	35,335,470	3,048,710,943
식품 진흥 기금	2013년	798,925,256	50,024,344	121,542,104	71,517,760	848,949,600
	2014년	848,949,600	48,007,414	121,168,104	76,160,690	896,957,014
	2015년	896,957,014	67,074,925	150,048,910	82,973,985	964,031,939
	2016년	964,031,939	12,994,125	109,880,920	96,886,795	977,026,064
	2017년	977,026,064	55,187,667	129,598,062	74,410,395	1,032,213,731
재난 관리 기금	2013년	1,421,919,078	35,291,542	496,721,302	461,429,760	1,457,210,620
	2014년	1,457,210,620	175,545,282	392,556,706	217,011,424	1,632,755,902
	2015년	1,632,755,902	183,527,720	495,049,585	311,521,865	1,816,283,622
	2016년	1,816,283,622	468,925,067	468,925,067	0	2,285,208,689
	2017년	2,285,208,689	471,148,658	489,648,658	18,500,000	2,756,357,347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해당 연도 증감액			해당연도 말 현재액
			계(A-B)	조성액(A)	사용액(B)	
옥외광고발전기금	2013년	212,742,939	140,553,731	140,553,731	0	353,296,670
	2014년	353,296,670	112,600,584	112,600,584	0	465,897,254
	2015년	465,897,254	94,714,619	133,299,619	39,585,000	560,611,873
	2016년	560,611,873	38,944,689	122,693,699	83,749,010	599,556,562
	2017년	599,556,562	△123,040,370	121,699,480	244,739,850	476,516,192
중소기업육성기금	2013년					
	2014년					
	2015년	0	1,000,000,000	1,000,000,000	0	1,000,000,000
	2016년	1,000,000,000	2,020,852,180	2,020,852,180	0	3,020,852,180
	2017년	3,020,852,180	2,058,256,680	2,058,256,680	0	5,079,108,860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종이며 계양구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검사결과 전년도말 조성액은 9,768,264,340원에서 수납액

2,997,628,448원과 사용액 372,985,715원을 가감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392,907,073원으로 결산서상 적정하게 표기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입금(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치금회수,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지며, 기금 사용액은 각 해당 기금의 비융자성사업(고유목적사업), 융자성사업, 예치금, 인력운영 등을 하는데 지출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 지출비율(사용액/조성액)은 12.44%로 전년도 지출비율 10.85%보다 14.65%p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을 보면 당해연도에 지출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현저하게 지출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전전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개년 기금 지출비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사용액	620,697,520	503,287,114	526,333,570	319,667,285	372,985,715	2,342,971,204
조성액	906,024,165	982,242,654	1,897,000,381	2,947,517,452	2,997,628,448	9,730,413,100
지출비율	68.51%	51.23%	27.75%	10.85%	12.44%	24,08%

1.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996년 설치되었고,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존속기한이 2019.12.31로 종료가 되어 기금심의위원회와 조례부서에서 재연장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분야(1997년 설치), 사회복지분야(2000년 설치), 기초생활분야(2002년 설치)로 나누어지며, 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회수(이자포함) 및 운용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재원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노인복지분야 2,000,000,000원, 사회복지분야 1,000,000,000원, 자활사업(구 기초생활)분야 500,000,000원으로 총 3,500,000,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재정건정성 기조 강화에 따른 기금 폐지(통합)운용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17.05.10)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분야”기금을 “노인복지사업분야”로 이입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 장학금사업이 일반회계 장학금사업과 중복이 되어 노인복지분야로 기금조성액을 전액 이관하여 기금조성액이 노인복지사업분야 2,100,000,000원, 자활사업분야 500,000,000원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 기타 운용수입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예치금 잔액은 3,048,710,943원입니다.

기금조성목표치 도달에 상관없이 자치단체 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은 정기예금에 적립하여 보존하고,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으로 관리, 그 재원으로 노인복지분야는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에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분야는 홈패션, 세차, 임가공 등 7~8개 자활근로사업단에 보증금상당액을 대여하고 이자포함 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자활사업 등)은 기금조성목표액에 도달한 만큼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더 적극적이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한 지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과징금 60%귀속), 시보조금(시도비 매칭사업 50%지원)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규에 있는 권고 사항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1억 미만이면 전액 적립하고, 1억~10억 미만이면 자체 운용수입금(이자수입, 기타수입등 전년도 이월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억 이상~50억 미만이면 70%를, 100억 이상 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모범업소지원, 맛집발굴, 위생교육지원, 소비자 감시원(40명정도, 매년 지원) 활동을 위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3.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05년에 설치되었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조성 목표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정적립금(최근 3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의 100% 이상을 적립하고 15%이상 금액(장기예치금액)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기말 기금 조성액은 489,648,658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적립금액 중 의무예치금은 최저적립액의 15%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지진, 건축물 붕괴, 대형 화재 등 주기적인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85%는 지자체 재난관리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적립도 가능한 재원입니다.

여기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와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예비비는 발생 시기 및 발생 예측이 가능한 재난(AI, 구제역 등 감염병 재난, 여름·겨울철 풍수해 사전대비 및 복구 비용 등)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8.1.1 현재 인천광역시 기금총액 533.87억이고 계양구는 34.62억(6.48%)으로 다른 구 기금 적립액 규모를 보면 중구 67.25억, 동구 13.99억, 남구 53.21억, 남동구 79.9억, 연수구 59.49억, 부평구 64.59억, 서구 106.42억, 강화군 41.33억으로 타 구에 비해 기금 보유액이 적은 편입니

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매년 각 구마다 달라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 적립을 보수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4.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0년에 설치되었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판 신고 인·허가수수료, 과태료수입, 이행강제금, 운용수입 등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조성 목표액은 5억으로 2015년에 목표액에 도달해서 2016년도부터 지출하였고, 당해연도에는 노후현수막을 교체하는데 90%, 옥외광고물 중 풍수해대비 안전도검사에서 위험한 광고물로 구분된 것을 교체하는데 10%지출하였으며, 2018년에는 오래된 시민게시판 벽보를

보수하는데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조달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센터에서 계양구를 지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나 공항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행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라 받는 매년 110,000,000원(10,000,000원×11개)과 이자수입이 전부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간판신고 인·허가 수수료도 재원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구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기금 재원조달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과태료수입 1억, 이행강제금수입 0.5억~0.6억, 인허가수수료수입이 1억~1.2억이 발생되었고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 귀속된 상황입니다.

5.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1995년에 설치되었고, 본격적으로 기금조성은 2015년부터이며, 관내 중소기업(수출유망기업, KS인증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연도에는 기금 목표액이 50억 정도 이었으나 2017년에 목표액이 100억으로 증액되어

기금 목표치에 달성하기 전 까지는 이자수입을 한도로 관내 중소기업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국내·해외 박람회, 전시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창업센터 설립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 채　　권(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총 계(2017년)		3,474,211,208	177,633,590	395,088,456	3,256,756,342
일반 회계	2013년	1,668,407,000	182,715,000	70,000,000	1,781,122,000
	2014년	1,781,122,000	216,314,000	0	1,997,436,000
	2014년	1,997,436,000	114,594,000	0	2,112,030,000
	2016년	2,112,030,000	57,399,000	0	2,169,429,000
	2017년	2,169,429,000	118,217,000	0	2,287,646,000
특별 회계	2013년	761,346,490	106,943,158	180,038,434	688,251,214
	2014년	688,251,214	193,293,370	208,522,625	673,021,959
	2015년	673,021,959	1,036,846,900	166,746,800	1,543,122,059
	2016년	1,543,122,059	100,397,680	603,082,461	1,040,437,278
	2017년	1,040,417,278	59,416,590	130,723,526	969,110,342
기금	2013년	35,662,772	884,708	0	36,547,480
	2014년	36,547,480	938,290	0	37,485,770
	2015년	37,485,770	938,300	0	38,424,070
	2016년	178,424,040	120,940,860	35,000,000	264,364,930
	2017년	264,364,930	10,000,000	164,364,930	110,000,000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74,211,208원에서 당해연도에 177,633,590원이 발생 되었고, 395,088,456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56,756,342원으로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118,217,000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창업 등)지원으로 구성되며, 올해엔 채권소멸이 없지만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사업으로 압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여기서 소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청산금수입과 지금은 폐지된 기초생활 의료수급자 의료지원 하는 의료보호대불금융자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으로 구성됩니다. 청산금수입은 시로 전액 귀속되며 당해연도에 부당이득금으로 59,416,590원이 발생되었고, 의료급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조치를 하여 금융자금이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나 당해연도에는 130,723,526원이 결손처분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기금은 전액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사업분야는 조성목표액에 도달하여 자활사업(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자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지원, 기술 교육 훈련을 시키고자 지원해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근로센터의 커피로스팅, 홈패션 등의 임대료, 보증금 등을 지원합

니다. 당해연도에는 추가 채권발생이 없고, 자활근로사업단이 기 설정한 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264,364,930원이 소멸 되었습니다.

Ⅵ. 채 무

우리 시·군·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165,300,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추가발생액은 없고, 3,320,300,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45,000,0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일반회계 (지방채무)	2013년	10,550,000,000	6,753,000,000	7,228,000,000	10,075,000,000
	2014년	10,075,000,000	0	569,700,000	9,505,300,000
	2015년	9,505,300,000	0	1,195,000,000	8,310,300,000
	2016년	8,310,300,000	0	3,145,000,000	5,165,300,000
	2017년	5,165,300,000	0	3,320,300,000	1,845,000,000

결산기준이 기존 채무액이 아닌 지방비부담액(재정상태 보고서상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로 표시됨)만이 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2009년에 변경되었는데 이를 잔액에 적절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채무 소멸액을 보면 먼저 채무상환예산 편성에 따라 1,320,300,000원이 상환되었고 6월에 결산확정이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9월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000,000,000원을 추가 상환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 중 2018년에 상환해야 할 유동성장기부채는 1,116,200,000원이고, 올해에도 결산확정 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을 추가편성 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길 예정으로 채무액 ZERO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신경 쓴다고 하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향후 3년간 채무 상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상환예정금액	1,116,000,000원	729,000,000원	0원	1,845,000,000원

2017년도 채무 3,320,300,000원, 179.96%(채무감소액 / 채무잔액)가 감소하였는데 전년도 순감소액이 3,145,000,000원, 60.89%(채무감소액 / 채무잔액)에 비해 175,300,000원, 119.07% 더 감소되었습니다.

Ⅶ.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증가액	감소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총 계(2017년)			750,320,865,171	30,725,682,254	1,613,684,466	779,432,862,959
행정재산	공용재산	2013년	139,172,292,606	4,666,733,567	925,984,220	142,913,041,953
		2014년	142,913,041,953	1,314,677,900	5,856,937,450	138,370,782,403
		2015년	138,370,782,403	4,745,301,951	546,192,111	142,569,892,243
		2016년	142,569,892,243	15,001,587,805	0	157,571,480,048
		2017년	157,471,480,048	50,000,000	117,675,102	157,503,804,946
	공공용재산	2013년	470,527,596,744	56,870,582,948	15,749,797,756	511,648,381,936
		2014년	511,648,381,936	64,120,589,560	13,694,011,070	562,074,960,426
		2015년	562,074,960,426	10,795,200,698	195,260,000	572,674,901,124
		2016년	572,674,901,124	16,225,023,640	5,200,000	588,894,724,764
		2017년	587,851,398,944	30,675,682,254	1,485,587,364	618,084,819,654
일반재산		2013년	4,600,564,059	80,813,130	18,496,000	4,662,881,189
		2014년	4,662,881,189		6,727,000	4,656,154,189
		2015년	4,656,154,189	95,070,010	0	4,751,224,199
		2016년	4,751,224,199	246,761,980	0	4,997,986,179
		2017년	4,997,986,179	0	10,422,000	4,987,564,179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52,637㎡ 313,342,596,794원, 건물 124,721㎡ 125,958,893,049원, 기타 314,311건 340,131,373,116원, 총 779,432,862,959원이며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Ⅷ. 물 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물품	증 가(취득)	감 소(처분)	당해연도말 보 유 물품
수 량	2013년	655	152	12	795
	2014년	796	222	14	1,004
	2015년	604	42	17	629
	2016년	629	41	31	639
	2017년	639	56	19	676
금 액	2013년	5,134,823,288	912,255,843	372,777,500	5,674,301,631
	2014년	5,675,841,631	1,237,963,270	128,207,160	6,785,597,741
	2015년	5,986,514,255	463,969,266	149,294,380	6,301,189,141
	2016년	6,301,189,141	444,935,860	125,884,210	6,620,240,791
	2017년	6,620,240,791	846,911,950	377,235,624	7,089,917,117

201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846,911,950원, 매각·폐기 등 377,235,624원, 당해연도

말 7,089,917,117원으로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Ⅸ. 성인지 결산

○ 성인지결산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원, %)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총 계(2017년)		62	24,633,009,960	22,466,467,991	91.20%
일반 회계	2013년	56	33,677,492,000	32,801,329,524	97.40%
	2014년	99	42,277,030,000	40,934,137,613	96.82%
	2015년	96	44,533,098,000	42,936,401,679	96.41%
	2016년	94	36,291,973,000	35,288,294,835	97.23%
	2017년	62	24,633,009,960	22,466,467,991	91.20%
기타 특별회계	2013년	2	386,264,000	324,878,410	84.11%
	2014년	3	843,889,000	674,262,100	79.90%
	2015년	2	466,650,000	429,194,250	91.97%
	2016년	1	353,050,000	327,345,860	92.72%
	2017년	0	0	0	0.00%

○ 성인지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원, %)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총 계(2017년)		62	24,633,009,960	22,466,467,991	91.20%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2013년	3	271,266,000	260,996,000	96.21%
	2014년	3	2,396,141,000	2,233,790,025	93.22%
	2015년	2	635,528,000	630,668,877	99.24%
	2016년	4	731,122,000	728,604,194	99.66%
	2017년	5	1,777,403,000	1,750,631,820	98.49%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2013년	54	33,790,990,000	32,864,511,934	97.26%
	2014년	96	40,666,818,000	39,317,517,218	96.68%
	2015년	94	44,201,476,000	42,581,618,522	96.34%
	2016년	84	31,835,411,000	30,849,857,946	96.90%
	2017년	54	22,663,434,960	20,524,564,961	90.56%
자치단체 특화사업	2013년	1	1,500,000	700,000	46.67%
	2014년	3	57,960,000	57,092,470	98.50%
	2015년	2	162,744,000	153,308,530	94.20%
	2016년	7	4,078,490,000	4,037,178,555	98.99%
	2017년	3	192,172,000	191,271,210	99.53%

성인지 예산은 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사업추진으로 성별 격차 해소로 양성이 평등한 문화 기반조성,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진출 지원, 사회참여 취약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폭력, 범죄 등 사고에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 도모,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지원 하고 있으며 분야별 규모 및 사업별 총괄은 위와 같습니다.

당해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62개 사업의 24,633,009,960원이 편성되었으며, 22,466,467,991원이 지출되어 91.2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세출예산현액 중 53.59%인 13,202,055,000원이 주민생활지원에 편성되었고 97.75%를 집행하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지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노인일자리사업)는 두 번째로 큰 성인지 예산으로 6,369,196,000원이 편성되었고 98.17%를 집행하여 노인사회활동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업대상자 남성비율이 13,422명(42.3%)인데 사업수혜자는 837명(27.95%)으로 남성분들의 참여 의지가 낮은데 이는 시간당 9,000원으로

일일3시간 27,000원, 월 270,000원으로 제한이 되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성 어른신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수당인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당을 높이는 것 보다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일 3시간으로 하되 월 15~20일을 하면서 월 일수를 늘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28.55%인 7,033,840,960원이 공원녹지조성에 편성되었고, 여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도시공원을 신규조성하여 주민 편익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되나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에 따른 양성 평등한 일자리 채용과는 관련성이 없어 성인지결산에서 제외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Ⅹ. 계약 결산

계약절차나 내용은 법령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나 물자, 용역 등의 계약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정부부문의 계약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강조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의 집행에 공정성이나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계약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약 유형	수의계약			경쟁입찰			계
	1인견적	2인이상	소계	일반	제한	소계	
건수	1,183건	70건	1,253건	58건	72건	130건	1,383건
(비율)			90.6%			9.4%	100%
금액	7,372,480,000	2,518,227,000	9,890,707,000	13,099,865,000	30,341,277,000	43,441,142,000	53,331,849,000
(비율)			18.55%			81.45%	100%

수의계약 1인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유형으로 금액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또는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나·다·마목)에 따르거나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금액기준으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경쟁으로 하나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설비등 제한요건이 붙으면 제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경쟁입찰로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용역(2구간)을 수의계약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2 나목 장애인등에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용역(1구간)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발행일 : 2018년 5월
□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편　집 : 재무과 재무팀
□ 참여자 : 재무과장　　공　　석
재무팀장　　임 학 준
담 당 자　　이 광 희
□ 인　쇄 : 디에이(T.032-207-3366)